

【11】 양주시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09. 4. .

제 출 자 : 양 주 시 장

1. 제정이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08.10.31. 공포)되어 용달화물자동차의 소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에 대해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여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양주시에 주사무소를 둔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중 소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고자 함.(안 제3조)

양주시 조례 제 호

양주시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별표1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양주시에 주사무소를 둔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중 소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실·과소		교 통 과
임 안 자	실·과소장 직위·성명	교 통 과 장 백 관 수
	팀 장 직위·성명	교통행정팀장 남병길(820-2661)
	담당자 성명·전화	실 무 자 윤정희(820-2664)

관 계 법령 발췌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29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해양부장관이 화물의 운송 수요를 고려하여 제4항에 따라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맞을 것
2. 화물자동차의 대수,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차고지 등 운송시설(이하 "운송시설"이라 한다),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⑥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증차를 수반하는 허가 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1. 제1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9조제1항에 따른 감차(감차) 조치 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⑦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 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4. 4.19.>

1.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 일정대수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2.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3.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 소형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허가기준 <개정 2004. 4.21.>) 법 제3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기준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04.4.21.>

[별표 1] <개정 2008.10.31.>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기준(제13조관련)

업종 구분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최저보유차고 면적	화물자동차 1대당 해당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해당 화물자동차의 길이 와 너비를 곱한 면적	화물자동차 1대당 당해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다만, <u>주사무소가 있는 특별시</u> <u>·광역시·시 또는 군의</u> <u>주차 여건과 교통상황</u> <u>등을 종합적으로 고려</u> <u>하여 소유대수가 1대인</u> <u>용달화물자동차 운송</u> <u>사업자에 대하여 차고지를</u> <u>설치하지 아니하도록 해당</u> <u>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u> <u>정한 경우에는 차고지를</u> <u>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u>

제21조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11조제1항 및 제12항에 따른 화물운송질서 확립,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차고지이용 및 운송시설에 관한 사항 기타 수송의 안전 및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10.5, 2003.2.27, 2004.4.21, 2007.2.1, 2008.10.31.>

1. 소유대수가 2대이상인 운송사업자의 경우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외의 지역에서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상주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할 것
2. 소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의 경우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와 이와 인접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외의 지역에 상주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할 것
- 2의2.** 허가받은 차고지외에서 밤샘주차를 하지 아니할 것. 다만, 귀로운행·차량 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허가받은 차고지외의 주차장 또는 차고지 등에서 밤샘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의3.** 별표 1에 따라 차고지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우 주차장 또는 차고지 등이 아닌 장소에서 밤샘 주차하지 아니할 것
3. 신고한 운임 및 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부당한 운임 및 요금을 받지 아니할 것
4. 화주로부터 부당한 운임 및 요금에 대한 환급을 요구받은 때에는 이를 환급할 것
5. 신고한 운송약관의 내용을 준수할 것
6. 사업용화물자동차의 바깥쪽에 일반인이 식별하기 쉽도록 당해 운송사업자의 명칭(소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인 경우에는 당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를 말한다)을 표시할 것
7. 화물자동차운전자의 취업현황 및 퇴직현황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하지 아니할 것
8.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위한 대인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화물자동차를 운행하거나 그 가입이 실효된 상태로 화물자동차를 운행

하지 아니할 것

- 8의2. 적재율배상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화물자동차를 운행하거나 그 가입이 실효된 상태로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지 아니할 것
9.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지 아니할 것
10. 적재된 화물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덮개·포장등을 하고 운행할 것
11. 화물자동차운전자로 하여금 차안에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을 게시하고 운행하도록 할 것
12. 차량 및 영업소의 청결상태를 양호하게 유지할 것
13. 화물자동차운전자로 하여금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속도제한장치 또는 동 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 기록계가 설치된 운송사업용 화물자동차를 당해 장치 또는 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상태에서 운행하도록 할 것

국토해양부령 제 63 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 중 “위반사항을”을 “위반사항을 매월”로, “유지하여야”를 “유지하고 관할 시·도지사에게 이를 자체 없이 제출하여야”로, “각목의 1”을 “각목의 어느 하나”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21조 각 호 의의 부분 중 “법 제10조제1항 및 제12항”을 “법 제11조제1항 및 제1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3. 별표 1에 따라 차고지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우 주차장 또는 차고지 등이 아닌 장소에서 밤샘주차하지 아니할 것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재정지원) 법 제43조제1항제5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영차고지의 건설
2.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
3. 유가 인상액의 보조
4. 「물류정책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 및

이를 위한 시설 · 장비 투자

5. 화물자동차의 감차

별표 1 중 최저보유차고면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최 저 보 유 차 고 면 적	화물자동차 1대당 해 당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해당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화물자동차 1대당 당 해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다만, 주사무소가 있는 특별시 · 광역시 · 시 또는 군의 주차 여건과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차고지를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차고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	--

별표 2 제2호의3란부터 제2호의5란까지를 각각 제2호의4란부터 제2호의6란까지로 하고, 같은 표에 제2호의3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3. 별표 1에 따라 차고지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우 주차장 또는 차고지 등이 아닌 장소에서 밤샘주차한 때	제21조제2호의3	<input checked="" type="radio"/> 위반차량운행정지(5일)
--	-----------	---

별표 3에 제1호의2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별표 1에 따라 차고지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 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우 주차장 또는 차 고지 등이 아닌 장소에서 밤샘주차한 때	제21조 제2호의3 (제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	10	10	20
---	---	----	----	----	----

별표 6에 제2호의2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별표 1에 따라 차고지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 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우 주차장 또는 차 고지 등이 아닌 장소에서 밤샘주차한 때	제 21 조 제 2 호 의 3 및 제41조의11	○위반차량운행정지 (5일)
---	-------------------------------	-------------------

별지 제13호의6서식의 서명란 중 “위의 사람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있음을 증명합니다.”를 “위의 사람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갖춘 자로서 위의 업체에 소속되어 있음을 증명합니다.”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개정이유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과 관련된 재정지원의 대상을 확대하고, 소유대수가 1 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확보의무를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명사상사고 등 교통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관리 강화(안 제19조 제4항)

(1) 인명사상사고 등 화물운송사업자의 교통법규 위반사항에 관하여는 협회가 지방경찰청장에게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행정처분의 권한을 가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교통법규 위반과 관련된 행정처분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2) 협회는 교통법규 사업용화물자동차운전자의 인명사상사고등 교통법규 위반사항을 매월 지방경찰청장에게 확인하여 그 기록을 유지하고 관할 시·도지사에게 이를 자체 없이 제출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교통법규 위반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관련된 행정처분의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나. 차고지 확보의무 면제에 따른 밤샘주차 제한 규정 보완(안 제21조 제2호의3 신설)

- (1) 차고지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허가받은 차고지 외에서 밤샘주차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밤샘주차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도로 등에 밤샘주차를 하더라도 이를 제한할 근거가 없게 됨.
- (2) 차고지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우 주차장 또는 차고지 등이 아닌 장소에서 밤샘주차하지 아니하도록 함.
- (3) 이와 같이 밤샘주차 제한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차고지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도로 등에 밤샘주차를 하는 문제점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재정지원 대상 확대(안 제43조)

- (1) 국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사업자단체 또는 운수사업자의 공영차고지의 건설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최근의 경유가 급등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의 경우에도 국가의 재정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사항에 유가 인상액의 보조, 「물류정책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 및 이를 위한 시설·장비 투자, 화물자동차 운수시장의 과잉공급 해소를 위한 감차를 추가함.

(3) 이와 같이 국가의 재정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적인 경영합리화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됨.

라.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확보의무 면제(별표 1)

(1)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인 점을 고려할 때 반드시 차고지를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중한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임.

(2) 주사무소가 있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주차 여건과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차고지를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차고지의 설치의무를 면제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차고지 확보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8.5.19.~6.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완화 1건(차고지 확보의무 완화)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화물자동차운전자의 관리) ① ~ ③ (생 략) ④ 협회는 사업용화물자동차운전자의 인명사상사고등 교통법규 위반사항을 지방경찰청장에게 확인하여 그 기록을 <u>유지하여야</u> 하며, 사업용화물자동차운전자가 제18조의2제2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운송사업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 ⑦ (생 략)	제19조(화물자동차운전자의 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u>위반사항을 매월</u> ----- ----- <u>유지하</u> 고 <u>관할 시·도지사에게 이를</u> <u>지체 없이 제출하여야</u> ----- 각 목의 어느 하나----- 해당 ----- -----.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10조제1항 및 제12항에 따른 화물운송질서확립,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차고지이용 및 운송시설에 관한 사항 기타 수송의 안전 및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2의2. (생 략) <u><신 설></u>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11조제1항 및 제12항----- ----- ----- ----- ----- ----- ----- ----- -----.
	1. ~ 2의2. (현행과 같음) 2의3. <u>별표 1에 따라 차고지 설</u>

	<p><u>치의무가 면제되는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우 주차장 또는 차고지 등이 아닌 장소에서 밤샘주차하지 아니할 것</u></p>
3. ~ 13. (생략)	3. ~ 13. (현행과 같음)
<p><u>제43조(재정지원) 법 제29조제1항 제5호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공영차고지의 건설</u> <u>2.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u> 	<p><u>제43조(재정지원) 법 제43조제1항 제5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공영차고지의 건설</u> <u>2.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u> <u>3. 유가 인상액의 보조</u> <u>4. 「물류정책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 및 이를 위한 시설 · 장비 투자</u> <u>5. 화물자동차의 감차</u>